

●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-45호

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1월 27일

식품의약품안전처장

1.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

영업자가 위탁 시험·검사기관에서 실시한 자가품질검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「식품위생법」이 개정(법률 제18363호, 2021. 7. 27. 공포, 2022. 7. 28. 시행)됨에 따라, 자가품질검사 확인검사를 요청한 영업자는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에게 보고하여야 하나, 주류를 제조하는 식품제조·가공업 영업자의 경우에는 등록관청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

2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·법인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하여 온

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(식품안전정책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(찬·반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, 전화번호

다. 보내실 곳

○ 주소 : (28159)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

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

○ 전화 : 043-719-2016, 팩스 : 043-719-2000

이메일 : beliebt81@korea.kr

※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(<http://www.mfds.go.kr>) 『법령·자료 - 입법/행정예고』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5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확인검사 요청 사실 보고

부 칙

이 영은 2022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5조(권한의 위임)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은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 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. <u><신 설></u> 1의2. ~ 3. 삭제 4. ~ 20. (생략)	제65조(권한의 위임) ----- ----- ----- -----. <u>1.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</u> <u>확인검사 요청 사실 보고</u> 4. ~ 20. (현행과 같음)